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규모 시설(3종)에 대하여, 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3종 시설물 의무지정 기준 도입(안 제5조제1항제2호)

1) 현행 대상 시설물 실태확인 후 관리주체가 판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의 의지·관심 부족시 3종 지정절차 누락·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사각 우려

2) 따라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에 대해 의무지정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취약시설물에 대한 상위 안전점검 의무화 (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수정)

1) 현행 3종 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육안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어 구조적 결함의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고, 점검시 중대결함이 확

인되어야 안전조치 실시 의무가 발생하나 육안점검으로는 확인이
곤란

2) 3종 시설물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 결과, 취약등급(D·E)일 경우에
한해 상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의무시행토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5. 02. ~ 0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별표 1의2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반드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⑤ 그 밖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다만,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2조에 따른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지정되어 그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5조제1항 전단 관련)”을 “(제5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u>별표 1의 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 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종 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① ----- ----- ----- ----- ----- 다음 각 호의 ----- ----- ----- -----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반드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u>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u>
<신 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그 밖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② ~ ④ (생 략)	<u>시한다.</u>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다만,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2조에 따른 안전등급이 <u>D·E등급으로 지정되어 그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 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5의2.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지정된 제3종 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594